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공고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채용 개요

○ 선발예정인원(3개 분야, 9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명)	근무예정지
인턴01	일반행정	4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시)
인턴02	조사행정	3	
인턴03	홍보	1	
인턴04	일반행정	1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합계		9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주요업무

지원코드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인턴01	국민참여 정책 운영, 제도개선 권고, 관련 법령 개선 등 해당 부서 일반행정 업무 지원	민간협력담당관실, 보호보상정책과,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인턴02	현장회의 및 조사, 민원데이터 분석 등 조사 행정 업무 지원	민원조사기획과, 긴급고충조사과, 국방보훈민원과
인턴03	위원회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청년층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참여 등 홍보 업무	홍보담당관실
인턴04	교육과정 운영 등 해당 부서 일반행정 업무 지원	교육지원과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합격자의 이력, 자기소개서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 예정

○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24. 5. 예정)로부터 6개월
- (보 수) 시급 9,860원, 월 2,060,740(세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응시 자격

□ 응시 자격(공통)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4.4.25.) 기준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관련근거 >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등 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가산점**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4.4.16.) 기준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인턴01 분야에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관련근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1호: 10점, 2호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1,2,4호 : 10점, 3,5호 :5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1,2,4호 : 10점, 3,5호 :5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1,2,4호 : 10점, 3,5호:5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5점)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4.4.16.) 기준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요건
인턴01 인턴02 인턴04	일반행정 조사행정	○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인턴03	홍보	○ 학력 ▪ 국내·외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학과) 광고홍보, 시각디자인 등 홍보 및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계열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채용일정(안)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4. 5.(금) ~ '24. 4. 16.(화)	'24. 4. 23.(화)	'24. 4. 25.(목)	'24. 5. 1.(수)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일 : '24. 5. 7.(화) 예정

※ 채용 일정,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보다 많을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가 지원한 경우,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인지 여부만 확인하여 모두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별 상(上)·중(中)·하(下)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성적 순

< 평정요소 >

- | | | |
|-----------------|-------------------|------------------|
|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위원 모두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모두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 접수 기간 : '24. 4. 5.(금) ~ '24. 4. 16.(화) 18:00
- 접수 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suvn@korea.kr)으로 온라인 제출
 -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 분할·중복 접수 불가
 -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로 기재 [예 : 홍길동(인턴1)]

5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필수)	① 응시원서 1부 : [붙임1]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3] 서식
	④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 [붙임4] 서식
서류전형 합격자 (해당자)	⑤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빙서류 ⑥ 자격증 사본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⑧ 상한 연령 연장하는 경우 증빙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필요서류 공고

가. 위 제출 서류 중 공통서류인 ①~④번의 경우,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함
 나. 서명한 공통서류 전체를 순서에 따라 전체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로(☎ 044-200-71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원서

응시원서

■ 지원 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 인턴01 ☐ 인턴02 ☐ 인턴03 ☐ 인턴04		
■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 추 가 사 항					
가 점	※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해당사항 기재)				
학 력	구분	전공분야	학적상태	학위취득(예정)일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휴학/수료/졸업		
경 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1.~ 2017.12.31.	상세히 작성	주00시간 근무	
자 격 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워드프로세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에 ☒
(예) 지원코드 : ☒ 인턴01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추가 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24. 4. 16.) 기준으로 작성

<붙임2> 자기소개서 양식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 인턴01	☐ 인턴02	☐ 인턴03	☐ 인턴04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개인정보 확인기관</u>	<u>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u>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2024년 월 일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